세계경제연구원

96－11
1996. 12. 16

세계경제지평
Global Economic Horizon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金 完 淳(연구자문위원, 고려대 교수)

8차에 걸친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의 타결로 각국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 국경상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함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 판매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GATT 1947하의 내국민대우원칙을 넘어서는 「공정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의 형성 또는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의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결정에 의해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9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는 등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1996년 12월 9일 싱가폴 WTO 제1차 각료회담 이후에는 무역과 환경 분야 이외에도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그리고 부패관행[1]등의 분야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방법 : 환경과 노동기준이 삶의 質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non-trade concerns)를 무역에 연계시키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투자와 경쟁정책은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있어 자유롭고 公正한 교역의 개념을 가일층 확대하여 경식통합(deeper integration)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협상 논의

1) 부패·무역연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도 한다. 해외시장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가 공정한 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패·무역연계의 배경이다. 부패척결을 위한 규범화 추진을 위해 미국은 WTO를 통하여 정부조달에서의 부패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를「포스트 우루과이 라운드」(Post Uruguay Round) 혹은「뉴 라운드」(New Round)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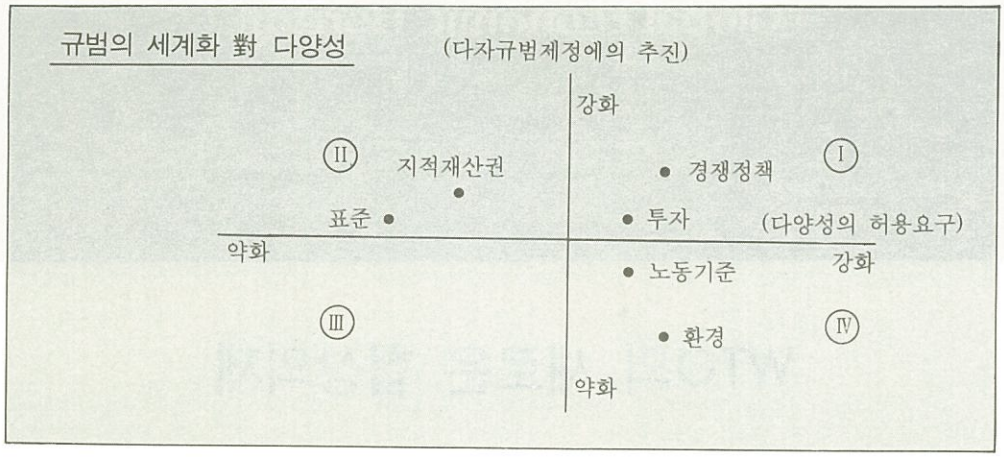

위의 도표는 상이한 국내제도 및 관행의 국제적 調和(harmonization)를 추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간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접근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2]. 다자간 규범의 설정목표로 이끌어가는 요인들은 국가간의 동질적인 소비선호, 수출입절차에 대한 무역업자들의 투명성과 간편성 요구,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노력 등이다. 반면 표준적용, 요소부존도, 소비유형, 생산방법 및 1인당 소득소준 등에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규범상의 다양성 허용 요구는 거세지게 된다.

도표의 제 1상한 및 제 2상한에 규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관련집단의 영향력이 강력한 의제들이 있다. 제 2상한에 위치한 의제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제들로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의무적인 제품기준, 위생 및 검역조치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협약들이다. 그렇다고 사안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채택을 원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하여 모든 국가가 반드시 공통된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제품기준에 대한 적합한 규범의 채택은 당해국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한 국가가 구속력있는 표준제도의 채택을 원하는 경우에만 다자적 규율이 적용된다. 이것은 공통된 표준을 적용할 것을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제 1상한에 위치한 의제들의 국제적 조화는 보다 복잡하다. 이 경우에는 다자적 규범의 채택을 강력히 추진하는 세력과 국가간 다양성의 인정을 요구하는 세력이 부딪친다. 제 2상한의 의제들과는 달리 제 1상한의 의제들을 다자화하는 데에는 논란이 많으며, 어

2) B. Hoekman and M. Kosteck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 From GATT to WTO*,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249-251.

떤 형태의 보상이 없이는 대부분의 의제의 경우 국제적 조화를 이룩하기 어렵다. 경쟁정책과 투자에 관계된 문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 4상한에는 다자규범에 다양성 또는 이질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한 경우이며 汎세계적인 調和는 거의 불가능하다. 환경과 노동기준이 제 4상한에 속한다. 공통된 접근을 허용하기에는 국가간 여건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은 일반원칙의 합의라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의 이행요구이며 노동기준에 있어서는 예컨대 국제적으로 강제노동을 위법화하는 합의가 될 것이다.

경쟁정책 : 경쟁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된 시장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경제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활동이 세계화되고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사이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독점금지법을 城外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르는 마찰의 증대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은 OECD의 논의에서나 APEC 저명인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가주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별로 산업구조나 거래관행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속력있는 국제적 경쟁규범을 제정하는 데에는 많은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투자 : 국제투자와 기업활동이 급속히 범세계화(globalization)하는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의 보완관계가 부각되었고 더 이상 투자문제를 무역과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또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시장접근의 주요 수단으로서 투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바탕으로 각국, 특히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자율화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투자 왜곡조치를 제거하고 국제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관련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다자차원에서의 투자규범 제정을 위한 추진배경이 된 것이다.

무역과 환경 :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에 따라 2년 시한으로 WTO 각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10개의 환경·무역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협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즉, 무역·환경 문제는 이미 WTO에

포함되어 있는 의제로서 1996년 12월 9일 WTO 첫 각료회의 의제로 예정되어 있었고, 무역·환경위원회는 그간의 작업을 종합하여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규범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WTO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무역-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規律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수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무역-환경 논의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WTO에서의 무역-환경 협상에서는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차이에 따른 제품차별화 문제가 핵심적 논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등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마라케쉬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이 UR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상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급속히 부상하였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무역·노동기준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의 진행, 그리고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끈질긴 시도 등으로 보아 개도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년말 WTO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퇴
미국 Boston대학교 경제학 석사(1962)
미국 Harvard대학교 경제학 박사(1969)
국제통화기금(IMF) Economist (1967~71)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1971~73)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1973~현재)
ADB Senior Economist(1981~83)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1989~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타 2505
전화: 551-3334/7 Fax : 551-3339
E mail : IGENET@chollian. dacom. co. kr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 글의 무단 전재 · 역재 · 복제를 금함